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36
----------	-----

2015년 7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7일
- 다. 상정일자 : 제26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 6월 25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의승 행정국장)

가. 제안 이유

2011년 조례 제정 시 제외한 숙소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부적절한 문장을 수정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1) “시설”에 대한 정의에 “숙소”를 추가(안 제2조).
- 2) 사용허가의 내용에 “인터넷사용신청” 을 추가(안 제4조).

- 3) 사용제한의 내용에 “숙소의 사용제한내용” 을 신설(안 제5조).
- 4)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의 반환의 내용 중에 “천재지변” 을 “악천후” 로 수정하고 반환사례를 추가(안 제6조, 제9조).
- 5) 사용료의 감면 내용 중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신설 (안 제8조 제4호).
- 6) 사용료 반환에 대한 처리기간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 신설(안 제9조).
- 7) 숙소 사용료 추가 및 운동장 사용료 조정(안 별표).
- 8)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및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에 숙소 추가(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 (2)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5.2.27.~3.18)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당시 제외되었던 숙소(다솜관)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터넷으로 사용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자가 사용할 경우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운동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기본 요금을 조정(당초 4시간 기준 20만원 → 필요시 시간당 요금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료 반환에 대한 처리기간 및 절차 등의 규정을 시민편의를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는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훈련시설,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국가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에 따라 제정된 조례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제23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국가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의 유상 제공에 따른 수입금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가. 숙소의 사용료 규정(안 제2조, 제5조, 별표,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 “시설”, “사용자”, “사용료”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제2조에 숙소를 추가하되,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단순 숙박용(관광숙박시설)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제한 규정을 두고, 1실(4인 1실) 1박에 2만5천원의 시설사용료를 받도록 하며, 최소 20명 이상의 경우 사용하도록(별표 시설사용료)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시설” 정의: 인재개발원 안에 있는 강당·강의실 등의 교육시설, 운동장·테니스장 등의 체육시설, 그리고 그 밖의 부대시설(숙소(다솜관) 배제)

〈개정〉 “시설” 정의: 인재개발원 안에 있는 강당·강의실·숙소 등의 교육시설, 운동장·테니스장 등의 체육시설, 그리고 그 밖의 부대시설(숙소 포함)

〈생활관(다솜관) 현황〉		
* 건립년도 : 1979년 8월		
* 건축규모 : 지하1, 지상5층, 연면적 5,583.9㎡		
연면적	5,584 ㎡	
지1층	162	창고 등
1층	1,257	식당, 체력단련실,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2층	1,056	숙소(6실), 도서관, 의무실, 차량지원실 등
3층	1,087	숙소(6실), 강의실(6~9)
4층	1,115	숙소(12실), 강의실(10~13), 다례실(예다원)
5층, 옥탑	907	숙소(12실)
* 용도 : 공공업무시설(공용의 청사)		

- 조례 제정 당시(2011. 9. 29)에는 민간인의 숙소사용시 야간안전사고, 화재발생 및 각종 시설물의 훼손 등의 우려와 화장실, 세면장이 각 숙소에 있지 않고 공동사용시설로 되어 있어 숙소로서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숙소의 대관은 제외하였으나, 서울시 감사담당관의 “2013년 서울특별시 종합감사”결과 실제 생활관 숙소를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에 유상으로 제공하면서 사용료를 징수하였는바, 관련 법령 등(지방재정법 제31조)¹⁾에 따라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권고를 받아 금번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최근 5년간 다솜관 숙소 외부 사용허가 내역〉

구분	사용허가 (회)	숙소 사용일(일)	사용 객실 수(개)
2011년	3	5	64
2012년	4	17	194
2013년	14	36	374
2014년	12	28	226
2015년(6월 현재)	6	15	124

○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단순 숙박용(관광숙박시설)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제한 규정은 둔 것은 본 생활관의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에 의한 ‘교육연구시설’로 숙박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일반시민에게 제공하려면 ‘숙박시설’로 건축물 용도변경이 필요하나 도시계획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어 용도변경이 불가하고, 시설을 무상으로 또는 민간 숙박업소 가격보다 저렴한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과 동일한 가격을 받는 경우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단순 숙박용(관광숙박시설)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현재는 인재개발원장 방침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냉난방비 등 감안 1실 39,200원, 1개층12실 509,000원)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세탁비, 수도 사용료, 전기요금 등 실 소요경비만을 산출하여 1실 당 2만 5천원의 시설사용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숙소 대관 시 안전 관리 등을 위해 직원의 상주 필요성은 없는지, 인건비 등 추가적인 소요경비는 없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용료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숙소 사용료 부과 산정(25,000원/1실) 〉

(단위 : 원)

계	세탁비	쓰레기 봉투	화장지	온수 사용료	수도 사용료	전기요금
25,100 (≒25,000)	21,000	400	300	800	1,100	1,500

※ 세부 산출기초 : 참고자료 참조.

- 한편, 현재 인재개발원 교육을 위한 생활관 활용 실적이 미미(연간 20~30일 내외)한 만큼 리모델링 등을 통한 재난·재해 등의 임시주거 시설로 활용하거나 학술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시민교육·워크숍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시설을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의 구호를 위하여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재해구호법」(제4조의2제1항제4호)²⁾에 따라 생활관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재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활용에 한계가 있음.

나. 저소득층 등에 대한 시설 사용료 감면 신설(안 제8조제4호 신설)

- 현행 서울특별시 각 기관이 교육 또는 행사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직원단체 또는 직원동호회가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전액 면제하고, 국가기관, 공공단체, 서울시 자치구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가 사용시에도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제4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4.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다만, 사회적 약자에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령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존재하므로, 다른 사회적 약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감면대상 확대 여부에 대해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다. 기타

- 본 개정안은 사용자께서 인터넷사용신청을 가능하도록 하고(안 제4조제1항), 사용자가 취소 및 사용료의 반환의 내용 중에 “천재지변”을 “악천후”(국어사전정의: 몹시 궂은 날씨)로 수정하고(안 제6조, 제9조), 사용료 반환에 대한 처리기간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안 제9조)하며, 현행 운동장 시설 사용의 경우 4시간을 기본사용시간(20만원)으로 하고 있으나 시간당 요금으로 기본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안 별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바, 시민 및 사용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강당·강의실”을 “강당·강의실·숙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출”을 “제출하거나 서울특별시 인터넷서비스로 신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숙소는 단순 숙박용(관광숙박시설)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제3호 중 “천재지변”을 “악천후”로 한다.

제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가 사용 시 50% 감액

제9조의 제목 “(사용료의 반환)”을 “(사용료의 반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이하, ‘취소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악천후 등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까지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 : 해당 사유 발생 당일에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제9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악천후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예상될 때, 또는 인재개발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 : 납부된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
 - 가.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취소 시 :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반환
 - 나.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취소 시 : 납부된 사용료의 75% 반환
 - 다. 사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시 : 납부된 사용료의 50% 반환
 - 라. 사용예정일 당일 날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함

③ 시장은 취소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2항의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중 1. 시설사용료의 체육시설란 다음에 “숙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숙소	4인/1실	1실 1박	25,000원	다음날 12:00까지
----	-------	-------	---------	-------------

같은 별표 비고란 중 “다.,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숙소사용은 최소 20명이상이 되어야 함.

라. 필요시 운동장사용은 기본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시간당 요금적용).

같은 별표 중 2. 냉·난방 및 전기요금의 “냉·난방 요금”란 중 “강의

실, 강당 등 실내시설”을 “강의실, 강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결재	담당	팀장	과장

협조:

기관(단체명)	대표자		전화	
			FAX	
주소				
실무책임자	(직)	(성명)	(연락전화번호)	
사용목적				
사용인원	명	사용기간	20년월일시부터	20년월일시까지
	(남: , 여:)			
사용할 시설	<input type="checkbox"/> 강당(○대강당, ○소강당, ○인재홀) <input type="checkbox"/> 강의실 (○대강의실: 개소, ○중강의실: 개소, ○소강의실: 개소) <input type="checkbox"/> 운동장 내 체육시설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input type="checkbox"/> 테니스장(○클레이 면, ○인조잔디 면) <input type="checkbox"/> 숙소 : 개실		<input type="checkbox"/> 주차차량수 : 총 대 (승용차량 대, 승합차량 대, 화물차량 등 기타 대) <input type="checkbox"/> 기타 참고사항 :	
사용료	총 원	산출내역		
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년월일				
신청자				①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장 귀하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

결재	담당	팀장	과장

협조:

기관(단체명)		대표자		전화	
				FAX	
주소					
실무책임자	(직)	(성명)	(연락전화번호)		
변경사유					
당초 사용인원	명 (남: , 여:)	사용 기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당초 사용할 시설	<input type="checkbox"/> 강 당(○대강당, ○소강당, ○인재홀) <input type="checkbox"/> 강의실 (○대강의실: 개소, ○중강의실: 개소, ○소강의실: 개소) <input type="checkbox"/> 운동장 내 체육시설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input type="checkbox"/> 테니스장(○클레이 면, ○인조잔디 면) <input type="checkbox"/> 숙소 : 개실		<input type="checkbox"/> 주차차량수 : 총 대 (승용차량 대, 승합차량 대, 화물차량 등 기타 대) <input type="checkbox"/> 기타 참고사항 :		
당초 사용료	원		반환 구좌		
변경(취소) 할 사항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기재출한 사용허가신청 내용 중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장 귀하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안에 있는 <u>강당·강의실</u> 등의 교육시설, 운동장·테니스장 등의 체육시설, 그리고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p> <p>2.~3. (생략)</p> <p>제4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 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5조(사용제한) ① (생략)</p> <p>1. ~ 5. (생략)</p> <p>② 축구장 등 체육시설은 체육활동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u>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u></p>	<p>제2조(정의) ----- -----.</p> <p>1. ----- ----- ----- <u>강당·강의실·숙소</u> ----- ----- -----.</p> <p>2.~3. (현행과 같음)</p> <p>제4조(사용허가) ① ----- ----- ----- ----- <u>제출하거나 서울특별시 인터넷서비스로 신청</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사용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u> -----.</p>

〈신 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생략)

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 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③ 숙소는 단순 숙박용(관광숙박시설)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

-----.

1. ~ 2. (현행과 같음)
3. 악천후 -----

4.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의 감면) -----

-----.

1. ~ 3. (현행과 같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가 사용 시 50% 감액

제9조(사용료의 반환 등)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 취소신청서(이하, '취소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1. 악천후 등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인재개발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을, 3일 전까지 취소시 사용료의 75%를, 1일 전까지는 50%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당일 날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신 설>

취소하고자 할 때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까지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 : 해당 사유 발생 당일에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악천후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예상될 때, 또는 인재개발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 : 납부된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

가.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취소 시 :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취소 시 : 납부된 사용료의 75% 반환

다. 사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시 : 납부된 사용료의 50% 반환

라. 사용예정일 당일 날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음

<신 설>

③ 시장은 취소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2항의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